

	<h2 style="margin: 0;">재수강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4-9
		제정일자	2015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재수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과목) 전학기 미취득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.

제3조(신청절차) ① 정규학기에 신청하는 재수강 학점은 학칙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한 최대 신청학점 범위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계절학기에 신청하는 재수강 학점은 계절학기 최대 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강등록) ① 정규학기에는 신청학기 등록금 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다.

②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성적평가) ① 정규학기에 신청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최고 A+까지 성적을 인정하며,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적부와 성적증명서에 “R(Repeated)”로 표기하고, 석차와 평균 평점에 반영한다.

② 계절학기에 신청한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, 최고 B+까지 성적을 인정한다.

제6조(성적부여) ①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으로 부여한다. 다만,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석차와 평균성적에는 관계없이 학점만 인정한다.

②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 계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재수강지도) 교무입학처는 재수강 신청자 명단을 학과에 통보하고, 학과장은 지도교수, 담당 교과목 교수와 협력하여 재수강자를 지도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